

#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관련 안내사항(학생용)

일반대학원 교학팀

## I.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신청자 및 과목 안내 [일반대학원생 신청기간: 2023.7.25.(화)~8.8.(화)]

### 1.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신청 조건

가. 종합시험 신청자 응시자격 확인경로: [통합정보시스템]→[대학원행정]→[학적]→[학적조회]→성적취득 탭

학년	학기	이수구분	교과목명	학점		실점	등급	평점	담당교수	재미수	인정구분
				학점	성적						
2018	1	이수학점	교과목명	학점	성적	학점	등급	평점	담당교수	재미수	인정구분
		교과목명									인정
		전공선택									인정
		전공선택									인정
2019	1	이수학점	교과목명	학점	성적	학점	등급	평점	담당교수	재미수	인정구분
		교과목명									인정
		전공선택									인정
		전공선택									인정
2020	1	이수학점	교과목명	학점	성적	학점	등급	평점	담당교수	재미수	인정구분
		교과목명									인정
		전공선택									인정
		전공선택									인정

- 1) 석사: 3학기 이상(단, 학.석사연계과정 학생은 2학기 이상)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  
**(18학점 이상 취득(취득학점+인정학점=18학점 이상 취득자 가능), 총 평균평점이 3.0 이상)**
- 2) 박사, 석·박사 통합: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  
**(27학점 이상 취득(취득학점+인정학점=27학점 이상 취득자 가능), 총 평균평점 3.0이상)**
- 3) 휴학생은 시험응시 불가
- 4) 수료생 시험 응시 가능. 다만 2024년 2월 학위수여가 목표인 경우, 논문자격시험과 수료 후 논문지도 등록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함  
**(수료 후 논문지도등록 신청기간: 2023.7.25.(화)~8.8.(화), 신청방법 별도 공지)**

5) 종합시험 면제 대체자의 경우 추후 종합시험 안내 시 지침에 따라 신청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

### 나. 외국어시험 신청자격

- 1) 신입생(어학기준 충족 시 과목 면제만 신청가능),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
- 2) 휴학생은 시험응시 불가(수료생은 응시가능)
- 3) 시험 신청기간 이후["시험면제신청" → "시험신청" 불가]  
**(면제 신청자는 8. 31.(목) 17:00까지 일반대학원 교학팀으로 2년 이내 공인어학 성적증명서 서면 제출)**

### 다.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응시 가능 과목

- 1) 종합시험: [해당학과 내규 참조](#)(일반대학원 홈페이지-학과-학과별 내규)
  - 내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석사 2과목, 박사 3과목
  - 종합시험은 과목당 4회까지 응시가능
  - 인정학점 과목은 단순 학점인정으로 종합시험 과목으로 신청할 수 없음
- 2) [외국어시험: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내규 및 해당학과 내규 참조](#)
  - 제2외국어(사학과, 영어영문학과 등-응시자 확인요망)
  - 시험횟수 제한 없음

2. 시험 신청방법: 학생: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위 → 자격시험관리 → (외국어시험·종합시험) 신청

3. 신청한 시험과목 수정방법: 학생→ 학과 교학팀으로 요청 → 학과에서 일반대학원 교학팀으로 메일을 통해 수정 요청(grad@hallym.ac.kr)

# 논문제출자격시험 관련 규정

## 1.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### 제 5 장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

제 18 조(학위논문지도)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작성 지도를 위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 19 조 (종류 및 합격기준)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하며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각 대학원별로 시행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)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며,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.

③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.

제 20 조 (외국어시험) ① 학위과정별 1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② 각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나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행여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와 제2외국어로 한다. 단, 제2외국어 시험에 대하여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행여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외국어시험의 출제, 채점 등의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.

제 21 조 (종합시험)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(단, 학.석사연계과정 학생은 2학기 이상)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서 대학원은 18학점 이상을, 특수대학원은 16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종합시험 과목 및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한다.

## 2.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내규(최종개정 2021. 2. 19)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32조 제3항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5장에 규정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논문제출 자격시험)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.

### 1. 외국어시험

#### 가. 석사학위과정

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1과목으로 한다. 다만,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험과목을 지정할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영어를 포함하여 불어, 독어, 중국어, 일어, 스페인어, 러시아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#### 나. 박사학위과정

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필수로 하고, 제2외국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서 시험과목을 지정할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불어, 독어, 중국어, 일어, 스페인어, 러시아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#### 다. 외국인 학생

외국인학생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'가', '나'에 명시된 자국어 이외의 외국어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응시 한다.

#### 라.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

1) 아래 각호의 1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영어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가) TOEIC 700점 이상

나) TOEFL(IBT) 80점 이상 \* CBT 213이상, PBT 550이상

다) TEPS 600점 이상(New TEPS 326점 이상)

라) IELTS 5.5 이상

2)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이 4급 이상일 경우 추가로 외국어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.

3) 1)~2)항의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시 해당 어학성적은 외국어시험 응시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이어야 한다.

## 2. 종합시험

가. 석사학위과정: 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반드시 2과목이상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.

나. 박사학위과정: 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3과목이상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.

다. 종합시험 대체기준: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학생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대체 한다.

1) 인문사회계열: KCI 등재지 이상 제1저자로 게재한 경우 단, SCIE급은 공동저자 포함

2) 자연공학의학계열: SCIE급 이상 제1저자로 게재한 경우 단, 인문사회계열 적용이 필요한 스쿨 및 학과(협동과정)는 학사위원회 심의 후 대학원장이 정한다.

라. 상기 종합시험 기준 이외 사항은 스쿨 및 학과, 협동과정 내규에 따른다.

제 3 조 (응시절차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시험일자) 외국어시험은 매학기초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종합시험은 스쿨, 학과(협동과정)별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 단, 국가재난 상황 발생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대학원장이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 5 조 (출제위원 위촉) ① 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분야별 학과별 1인 또는 2인으로 하며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②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해당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제 6 조 (시험 출제 방법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한다.

## 1. 외국어시험

외국어시험은 외국어관련 학과 교수가 출제하는 기초공통분야와 관련학과별로 출제하는 전공분야로 구분 한다. 다만, 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만 출제할 수 있다.

## 2. 종합시험

종합시험과목의 범위와 내용은 응시자의 이수과목을 참작하여 관련학과별로 출제한다.

제 7 조 (시험시간 및 배점) ① 기초공통분야와 전공분야로 출제되는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90분으로 하고, 배점은 기초공통분야 35점, 전공분야 65점으로 모두 100점 만점으로 한다.

② 전공분야만 출제하는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60분으로 하고, 100점 만점으로 한다.

③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60분으로 하고,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.

제 8 조 (응시회수) ① 외국어시험은 횟수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.

② 종합시험은 4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.